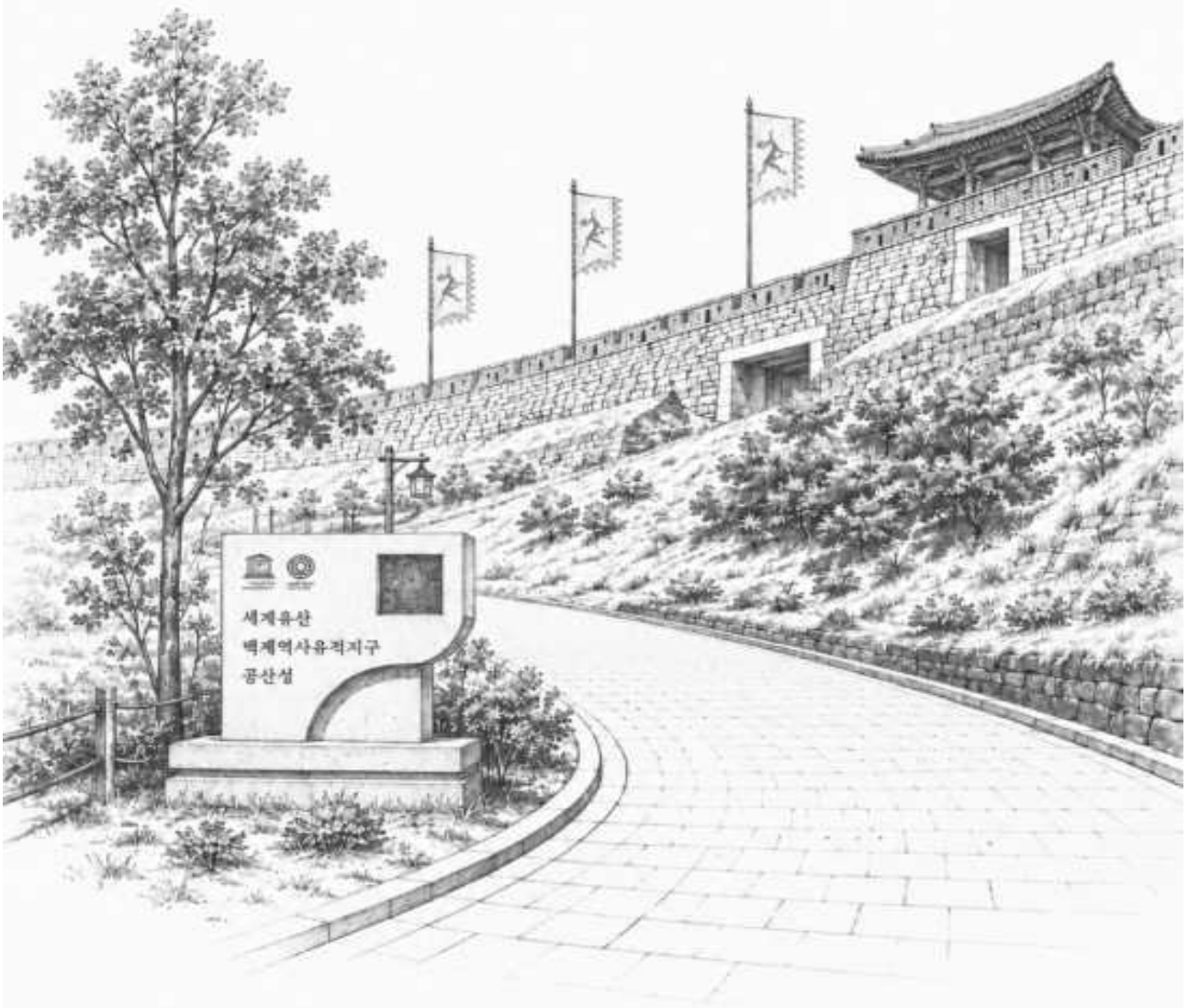


강한공주 행복한시민

공주시보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제994호 2026. 9. 21.(월)



<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>



【공 고】

제2026-2566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

공주시 공고 제 2026 - 2566호

「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1일

공 주 시 장

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공주 - 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구축사업에 따라 2027년 1월 공주 - 세종 일원에 간선급행버스를 시범 운행 후 운행 개시하고자 함
- 이에 따라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『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2조제3호 라목
*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→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『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2조제4호
*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→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
- 『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2조제5호
* 시내버스 요금 → 대중교통 요금
- 『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4조제2항
* 「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」 → 「충남형 교통카드」, 「충남형 알뜰교통카드」

3. 입법 예고기간 : 2026. 9. 21. ~ 2026. 10. 12.(21일간)

4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(참조: 교통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 : 공주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

- 주소 : 공주시 봉황로 1 / 우편번호 32552

- 전화 : 041) 840-7762, FAX: 041-840-2328

5. 참고 사항

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(www.gongju.go.kr) 고시공고(입법예고)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☐ 의 견

입법예고(안)	의 견(안)	사 유

☐ 의견제출자

- 성 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 :
- 주 소 :
- 연락처 :

☐ 기타 참고사항 :

☐ 제 출 처 :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(☎ 041-840-7762)

☐ 제출방법 ㄱ 우편 :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(32552)

ㄴ FAX : 041-840-2328

공주시 조례 제 호

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라목 중 “「**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”를 “「**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**시내버스를**”을 “**대중교통을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**시내버스**”를 “**대중교통**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**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**」”를 “「**충남형 교통카드**」, 「**충남형 알뜰교통카드**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,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가. ~ 다. (생략) 라. 「<u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. ~ 사. (생략) 4. “교통카드”란 공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<u> 시내버스를 </u>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. 5. “할인요금”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<u> 시내버스 </u>요금을 말한다. 6. (생략) 제4조(할인대상 등) ①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「<u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 ----- ----- ----- 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 4 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중교통을</u> ----- -----. 5 . ----- ----- <u>대중</u> <u>교통</u> -----. 6. (현행과 같음) 제4조(할인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--	---

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노인 등은 「<u>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</u>」를 지참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「<u>충남형 교통카드</u>」, 「<u>충남형 알뜰교통카드</u>」 ----- -----.
--	---



선 람	기관위원장

회 람						

발행 : 공주시 편집 : 홍보미디어실 ☎ 041-840-8464
 우)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